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871

발의연월일: 2022. 6. 10.

발 의 자:정태호·강득구·김정호

맹성규 • 민병덕 • 박광온

송갑석 • 유준병 • 이성만

이수진 • 한병도 • 홍성국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벤처기업 투자와 관련된 중소기업창업자, 중소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등(이하 "중소기업창업자등")에 대하여 자금유입의 활성화, 벤처기업 일자리 창출지원,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등을 위하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주식이나 출자지분 취득에 대한 세액 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세제지원을 하고 있지만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2021년 중소기업창업자등에 투자된 벤처투자금액은 전년 대비 78.4% 증가한 7조 6,80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러한 중소기업창업자등의 투자에 대하여 현행 조세지원 특례를 지속적으로 연장함으로써 제2벤처붐이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음.

이에 중소기업창업자등에 대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주식이

나 출자지분 취득에 대한 세액 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다음의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2년 연장함.

-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등(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중소기업창업자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기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안제13조제1항·제4항)
- 나.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자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100분의 5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등(안 제13조의2제1항)
- 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 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등(안 제13조의4제1항·제3항)
- 라. 전문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자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 등(안 제14조제7 항·제8항)
- 마. 벤처기업 출자자의 경우 해당 벤처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농어촌 특별세, 강제징수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면제 등(안 제15조제1

항)

- 바.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출자나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안 제16조제1항)
- 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중소기업창업자등에 직접 출자함으로 써 취득한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면제 등 (안 제117조제2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제4호·제5호·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 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2년 12 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7조제2항제1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아 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 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 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과세) ①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 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 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 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 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 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 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 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벤 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 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 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 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 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2024년 12월 31일-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 마. (생 략)

- 4.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 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창 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2 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
-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46조의7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

	가. ~ 마. (현행과 같음)
4.	
	<u>2024</u>
	년 12월 31일
5.	
	<u>2024년 12월 31일</u>
C	
6.	

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 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 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 는 출자지분

②·③ (생 략)

④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생략)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저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

2024년 12월 31일
<u> </u>
②・③ (현행과 같음)
4
<u>2024</u>
년 12월 31일
· ⑤ (현행과 같음)
세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24년 12월 31일

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② ~ ⑤ (생 략)

- 제13조의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 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 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 기획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 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 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 상기업"이라 한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
세) ①
<u>.</u>
1
<u>2024년</u>
12월 31일

츼	득하	즈시	\sqsubseteq
쉬	국 안	十二	0

-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제13조제1항제3호 각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등을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 3.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 금운용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투자대상기업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 ② (생략)
-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 1항에 따른 출자로 투자대상기 업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2
<u>2024</u>
년 12월 31일
3
<u>2024년 12월</u>
31일
② (현행과 같음)
3
<u>2024년 12월 31일</u> -

다.

- ④ (생략)
-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략)
 -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u>2022년 12월 31일</u>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⑧ 제1항제1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1항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벤처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 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벤처기업의 「국세기본법」 제3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
과 같음)
(7)
<u>2024년 12월 31일</u>
8
<u>2024년 12월 31일</u>
,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u>2024년 12</u>
월 31일

(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강제징수비(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지지 아니하는 금액의 한도는출자자 1명당 2억원으로 한다.

1. • 2. (생략)

② ~ ④ (생 략)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기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 00분의 10(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

2024년 12월 31일
•
· 1.•2. (현행과 같음)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 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 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 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 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 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 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 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 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 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 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 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 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략)

② ~ ④ (생 략)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세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인출·편입·현물출자·주식이전·주식교환하는 것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
 제2호의4, 제2호의5, 제3호 및 제4호: <u>2022년 12월 31일</u>
- (생략)
 ③·④ (생략)

(현행과 같음)
②
1
2024년 12월 31일
<u>2024년 12</u> 년 31 <u>년</u>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